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-16호

「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」 제17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 및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제21조의2제1항제14호 나목에 따라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리·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5. 3. 2.

우정사업본부장

우정사업 부동산 관리·운영 위탁법인 및 위탁업무 지정 고시

1. 위탁법인 : 재단법인 우체국시설관리단

2. 위탁업무

가. 우정사업 부동산 시설 유지관리 및 위생관리 업무

나. 우정사업 부동산 경비(청사, 금융창구, 안내, 주차관리 등)업무

다. 우정사업 부동산 관리·운영(자산관리, 임대, 임차 등) 및 컨설팅 업무

라. 우정사업 정보통신설비 설치 및 유지·보수 업무

마. 기타 위 각호 및 우정사업 조직에 속한 부동산 관련 부대업무 등

부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,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2-62호(2012.11.07.)는 폐지한다.